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8.3.21.(수) / 총2매(본문2)
담당 부서	건설산업과	담당자	·과장 박병석, 사무관 조태영, 주무관 허동혁 ·☎ (044) 201-3542, 3543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‘타워크레인 안전 관련 법률, 국토위 졸속 통과’ 보도 관련

- ‘17.11.1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‘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’은 정부의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 조사결과*에 따라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밝혀진 현장의 작업방법 불량과 설비 결함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,

* 최근 5년간 사고원인 분석결과(고용노동부, '17.9월 기준), 총 23건의 사고중 18건(78%)은 작업수칙 미준수, 5건(22%)은 기계결함임

- 국토교통부는 설비 안전성 강화를 위해 20년 초과 노후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을 포함한 「건설기계관리법」 개정, 고용노동부는 현장 작업주체별 관리책임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포함한 「산업안전보건법」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.
- 타워크레인 업계에서 지적하는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는 이미 대책에 검토·반영되어 있으며, 설치·해체업 등록제 도입, 전문자격제도 신설, 작업자 교육제도 개편 등 전문인력 역량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이를 통해 안전한 현장 환경이 조성되면 안전문제로 현장 작업을 망설이던 설치·해체 작업자와 조종사들도 현장에 진입하여 인력수급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- 아울러 '18.3.19일 국회(권은희·이학재·하태경 의원실)에서 주최한 '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'에서 제기된 문제와 대안에 대해서는 이미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- 타워크레인은 총량제 등 수급조절의 대상이 아니고, 설치·해체 작업은 작업자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므로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해외인력 도입은 신중해야 하며, 문제장비로 지적된 '290HC' 모델의 조사를 포함하여 제조사 리콜제도는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헤럴드경제 3.21.) >

- ◆ '타워크레인 문제점 알겠는데...' 국토위 졸속 통과
 - 20년 이상 노후크레인 연식제한 도입 등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대책 관련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국토위에서 별다른 논의 없이 통과
 - 타워크레인 업계는 사고의 주요 원인은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이라 주장
 - 정부는 총량제, 해외인력 수입, 제조사 리콜제도 활성화 등의 대안에 대한 검토없이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는 연식제한 도입을 추진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 건설산업과 조태영 사무관(☎ 044-201-35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